



제주여성가족연구원  
JEJU WOMEN & FAMILY RESEARCH INSTITUTE



제주특별자치도  
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
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 Mental Health Center

## 제주여성가족연구원 -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력협약서

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폭넓은 교류협력 및 연구를 통해 여성·가족·아동·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정신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공동협력사항)** ①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1.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
2. 정신건강복지증진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활동지원
3. 인적교류 및 현안과제에 대한 자문
4. 공동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
5. 연구자료 공유·활용·정보 교류
6. 기타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상기 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3조(경비부담)**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**제4조(협약의 준수)** 양 기관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,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5조(효력발생 및 협약기간)** ①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②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하거나,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.

**제6조(협약의 조정)** 이 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조정한다.

**제7조(목적외 사용금지)** ① 양 기관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업무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상호간의 협력사업 추진 이외의 목적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이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 보안상 필요할 경우 일방적으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.

**제8조(협약서 교환)**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8월 14일

제주여성가족연구원  
원장 이 은 희

제주특별자치도  
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
센터장 김 문 두